



계절학기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3-2
제정일자	1989.09.01
개정일자	2015.08.01
개정번호	Ver.5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8조 제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수업시간수)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1학점에 15시간 이상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과목당 1일 설강시간은 4시간 이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은 예외로 한다.

제4조(개설과목) 계절학기의 개설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
2. 본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

제5조 (신청학점) ① 전문학사과정의 계절학기는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

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

③ 1,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폐강기준) 동일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.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도 설강 할 수 있다.

제7조(수강대상자)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본 대학 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에 한한다.

제8조(수업,시험 및 성적인정) ①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를 활용한 재택 수업 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계절학기의 수업, 시험 및 성적인정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및 현장실습운영규칙을 적용한다.

제9조(수강신청)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기개시 4주전에 수강신청 일정을 공고한다.
2. 학기개시 1주 이전에 수강신청 기간을 설정한다.
3. 수강 희망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, 등록을 필한 후 수강에 임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실습 또는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에 한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0조(출석부작성) 과목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출석부를 작성하여야

한다. 다만,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칙에 따른다.

제11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**(개정)**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한다.
- (2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2015학년도 하계방학부터 시행한 현장실습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